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하던 것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단서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분담금액은 해당기간의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 1항에 따른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제31조(분담금액) ① ----- -----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 보험등에 가입해야 하는 자: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 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 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신설>	1. ----- ----- ----- ----- ----- --. <u>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의 분담금액은 해당기간의 책 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 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4761